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2299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22998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5165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함평군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판결 선고 2016. 6. 28.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516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때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267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재위임받은 함평군수의 승낙 아래 원고 또는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2007년 5월경부터 2011. 12.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조성하고 2008년경부터 매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한 것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부분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심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의 점유주체, 국유재산법상 양여 제한조항,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조항,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